

대법원 2012. 11. 15 선고 2012다201441 판결 [부동산압류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, 상고인

박AA 외2명

피고, 피상고인

대한민국

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. 7. 25. 선고 2012나3262 판결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이 유
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,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